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자 료</h1> <p style="color: red;">10월 8일(화) 조간 (10.7. 12:00 이후 보도)</p>	
배 포 일	2019. 10. 7. / (총 4매)	담당부서	출산정책과
과 장	손 문 금	전 화	044-202-3390
담 당 자	정 우 진		044-202-3395

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

- 10월 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(보조생식술) 건강보험 적용 및
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-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, 오는 10월 24일(목)부터 **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(사실혼 부부)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.**
- 난임치료시술이란,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**의학적 시술(보조생식술)**이다.
-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하여, **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되었다.**

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 "난임(難妊)"이란 부부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. (2019.10.24. 시행)

- 이에 따라,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,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.
-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,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
 - (시술동의서)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
 - (가족관계등록부)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
 - (주민등록등본)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,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
 -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, 법원,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·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
 -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,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·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
-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.
 -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경우라면,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.

<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,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 >

적용대상 연령(여성 기준)			만44세 이하		만45세 이상	
			건강보험 본인부담률	정부지원 상한액	건강보험 본인부담률	정부지원 상한액
체외수정	신선배아	1~4회	30%	50만 원	50%	40만 원
		5~7회	50%	40만 원		
	동결배아	1~3회	30%	50만 원		
		4~5회	50%	40만 원		
인공수정		1~3회	30%	50만 원		
		4~5회	50%	40만 원		

- 이번에 변경되는 사실혼 난임부부의 확인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 없이 129)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.
-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“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 하겠다”고 전했다.
- 또한 “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·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< 붙임 >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

붙임

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

기본서류 (법률혼부부 제출서류)	1. 시술비 지원신청서 및 난임진단서 1부 2. 건강보험증 사본 1부 3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·차상위자격증명 1부 4. 맞벌이 사실증명 서류(사업자등록증명원, 위촉증명서 등) 1부 5. 부부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6. 당사자의 시술동의서 1부 ※ 2, 3의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
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사실혼 부부의 상태	추가 증빙서류	
	1년 이상* 거소를 같이 한 경우 (1년 이상 거주지가 동일했을 경우)	그 외
부부 모두 한국 국적	1. 시술동의서 2.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 3.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씩	1~3. 좌동 4.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** 1부 ※ 4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,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
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	1. 시술동의서 1부 <내국인 대상> 2. 주민등록등본 1부 3. 가족관계등록부 1부 <외국인 대상> 4.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-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 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 1부	1~4. 좌동 5.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※ 5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,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

* 기간 인정 기준 : 동거가 시작된 기간 또는 정부기관·보증인이 사실상 혼인 관계를 인정한 시점부터 계산하여 보건소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인정

**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예시

- “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”의 판결문
- 행정심판위원회, 보훈심사위원회, 범죄피해구조심의회,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으로 인정한 경우